



보도 일시	2022.11.25.(금) 11:10 이후 사용	배포 일시	2022.11.24(목) 07:00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	책임자	과 장 김재중 (044-200-2662)
		담당자	서기관 백승엽 (044-200-2663)

계절관리제로 겨울철·봄철 미세먼지 더욱 줄인다

한덕수 총리 주재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

□ 「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*」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1~10% 더 감축

* (22.12월~23.3월)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, 석탄발전 및 대형사업장 감축 등 실시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5일(금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*(위원장 : 국무총리, 문길주 교수)를 주재했다.

* 미세먼지에 관한 주요 정책·계획 및 이행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,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정부·민간 위원으로 구성(미세먼지법 제10~11조)

** 참석 위원

- △ 민간(13명) : 문길주 민간위원장, 장영기, 전해영, 이미혜, 추장민, 정승일, 배귀남, 박지영, 송미정, 임영욱, 이미욱, 유영, 이승묵 위원
- △ 정부(11명) : 환경부 장관, 고용부 장관, 교육·과기·행안·해수·문체·중기부 차관, 국무1차장, 산림·기상청장

○ 이번 회의에서는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‘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’을 심의했다.

□ 앞서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% 감축하여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$18\mu\text{g}/\text{m}^3$ 에서 $13\mu\text{g}/\text{m}^3$ 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.

○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도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되었고, 이를 위해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(2021년 12월~2022년 3월)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%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.

-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로서, 올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.

【 계절관리제 차수별 감축량 및 이번 목표 (단위 : 톤) 】

구분	초미세먼지 (직접배출)	초미세먼지 생성물질 (2차 생성 원인)		
		황산화물	질소산화물	휘발성유기화합물
계절제 시행 前 배출량 ('18.12.~'19.3.)	31,519	97,484	390,713	338,856
제1차 계절제 감축실적 ('19.12.~'20.3.)	5,224	24,953	39,714	21,395
제2차 계절제 감축실적 ('20.12.~'21.3.)	5,575	32,026	41,940	21,364
제3차 계절제 감축실적 ('21.12.~'22.3.)	6,108	36,109	52,938	22,255
제4차 계절제 감축목표 ('22.12.~'23.3.) [제3차 계절제 감축실적 대비 증가율]	6,248 [2%]	36,580 [1%]	58,436 [10%]	22,774 [2%]

□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한 ‘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첫째,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.
 - 지난 10월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, 공공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인 감축을 시작했고,
 - 이번 달부터 행정·공공기관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 배출 단속 및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하고 있다.
- 둘째,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 감축·관리를 강화한다.
 -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,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한다.
 - 또한, 무인기(드론)·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(分光)장비를 새로 도입하고, 민간감시단을 투입하여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.
 -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 중 8~14기를 가동정지하고, 최대 44기의 출력을 80%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*을 추진하며, 민간석탄발전은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하여 모든 발전소**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감축에 동참한다.
 - * '23.3월 가동정지·상한제약 규모는 '23.2월에 확정 / 상한제약은 전력수급, LNG 등 국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운영하되,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은 전년 수준으로 감축
 - ** GS동해전력, 고성그린파워, 강릉에코파워

- 한편, 지난 10월 18일부터 행정·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내온도 17℃ 제한, 난방기 순차 운휴,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, 경관조명·실내조명 사용 금지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 중이며,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부문 동참을 이끌 예정이다.
-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·대구까지 확대하고,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.
- 또한,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,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하여 교통수요를 관리한다.
- 아울러,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·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,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.
-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·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. 아울러, 5대 항만(부산항·인천항·여수항·광양항·울산항) 내 차량 속도제한(10~40km)도 이루어진다.
- 농업·생활 부문은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증액(2022년 10원/kg → 2023년 20원/kg)하고,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한다.
-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을 늘리고, 건설 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단속하며, 민감·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확대한다.
- 셋째, 감축·관리와 함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.
- 지하역사·철도·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지속 점검하고,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·유치원·학교·노인요양시설 등 민감·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한다.
- 건설·환경미화·택배업 등 옥외작업자에게 고농도 시 마스크 보급도 지원한다.

○ 넷째,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하고, 미세먼지 대응 국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.

-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,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.
- 아울러,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·평가 등 전 과정에서 한·중 협의를 지속하고,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(UNESCAP)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고농도 대응의 협력 기반도 점차 마련할 예정이다.

□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여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.

○ 아울러,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내년 중 국정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.

- ※ (붙임) 1.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본체계
 2. 제3차 계절관리제와 비교
 3.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요
 4.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부처별 담당자 현황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	책임자	과 장	김재중 (044-200-2662)
		담당자	서기관	백승엽 (044-200-2663)
담당 부서 <공동>	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영민 (044-201-6860)
		담당자	사무관	박재완 (044-201-6874)



목표

**PM-2.5 6,248톤(20%), SOx 36,580톤(38%),
NOx 58,436톤(15%), VOCs 22,774톤(7%) 감축**

※ 계절관리제 시행 전('18.12월~'19.3월) 배출량 대비

3대
방향

1. 선제조치 : 공공사업장 조기 감축, 이행효과 사전 제고
2. 관리강화 : 부문별 감축, 건강 보호, 정보제공 확대
3. 국제협력 : 한·중 쏘 과정 협력, 동아시아 공동대응 기반 마련

21개
과제

선제 조치		국민건강 보호	
① 공공사업장 등 조기 감축·관리(10월~) ② 계절관리제 이행효과 사전 제고(10월~)		⑯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⑰ 민감·취약계층 대상 점검·지원	
부문별 감축·관리 강화		정보 고도화 및 제공 확대	
산업 · 발전	③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이행력 제고 ④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 입체적 감시·단속 ⑤ 석탄발전 가동 축소 ⑥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	⑱ 미세먼지 관측 강화 ⑲ 미세먼지 정보 제공 확대	
	⑦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⑧ 교통수요 관리 ⑨ 운행차 및 자동차 민간검사소 단속 ⑩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제고 ⑪ 선박·항만 미세먼지 관리 강화		
수송		국제협력 강화	
농업 · 생활	⑫ 농촌 불법소각 방지 ⑬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⑭ 도로 미세먼지 제거 ⑮ 미세먼지 안심공간 확대	⑳ 한·중 협력 지속 ㉑ 동아시아 공동대응 기반 마련	

붙임 2

제3차 계절관리제와 비교 [주요 변경사항]

구분	제3차 계절관리제('21.12~'22.3월)
선제 대응	· 지역난방, 공공자원회수시설 등 조기 감축(10월~) · 수도권 5등급차 모의단속(10월~)
감축·관리	· 대형사업장 계량적 감축 목표 설정 · 불법배출 사업장 드론이동차 감시 · 석탄발전 가동 축소 · 공공기관 전력수요 점검(330개소) ·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 확대 (법령상 예외 차종해 조치, DPF 장착불가 차량 중 일부 외 예외 폐지) · 6개 특광역시 운행제한 조례 마련 추진 · 운행차 민간검사소 집중단속 ·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공사계약조건 반영 · 선박 연료유 사용점검 확대(310척) 및 선박 저속운행 참여율(60%) 제고 ·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(8,470→9,316개소) 및 공익직불제 연계 적정 처리 유도 · 비산먼지 자발적 저감 공사장 확대(13개사) · 도로청소차 확충(1,666대) · 집중관리구역 확대(46개소) ·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(4,264개소) · 민감취약계층 시설 자체 전수점검 · 미세먼지 관측 강화 (항공: 서해수도권→동해 / 선박: 30일→365일) · 에어코리아 미세먼지 통합정보 제공
국제 협력	· 한·중 계절관리제 쉼 과정 협력(계획 수립, 핫라인 운영, 공동 평가 등)

제4차 계절관리제('22.12~'23.3월)
· 지역난방, 공공자원회수시설 등 조기 감축(10월~) · 수도권·부산·대구 5등급차 모의단속(10월~) (新)(强)
· 대형사업장 계량적 감축 목표 설정 및 간부 전담 관리 (强) · 불법배출 사업장 드론이동차·원격분광장비 감시 (强) · 석탄발전 가동 축소, 저유황탄 사용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 확대 · 공공기관 실내난방 17℃ 제한, 권역별 난방기 순차 운송,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, 경관조명 및 실내조명 조등 조치 (新)(强) ·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 (제3차 기간과 동일) · 부산·대구 5등급차 운행제한 의무화 및 대전·울산·광주·세종 시범 단속 (新) · 공영주차장 5등급차 할증,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 등 교통수요 관리(서울 → 추후 확대) (新) · 운행차 민간검사소 집중단속 및 안전신문고 등 신고 활성화 ·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공사계약조건 반영 여부 이행 평가 (强) · 선박 연료유 사용점검 확대(630척 이상) 및 저속운행 참여율 제고(60→68%) (强) · 항만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·운영 및 현장점검 강화 (新) ·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증액 (新) ·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(총 9,985개소) (强) · 비산먼지 억제조치 위반 단속 강화, 관련 평가 반영 및 자발적 저감 공사장 확대(13 → 14개사) (强) · 도로청소차 확충(총 1,805대, 친환경차 위주) 및 집중관리도로 확대(1,972→2,031km) (强) · 집중관리구역 확대(총 50개소) 및 자체점검 강화 (强) ·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 (총 4,477개소) (强) · 민감취약계층 시설 자체 전수점검 · 미세먼지 관측 강화(고도관측망 신설 등) (强) · 고농도 36시간 전 예보 시작(수도권 → 추후 확대) (新)
· 한·중 계절관리제 쉼 과정 협력(계획 수립, 핫라인 운영 및 실무협의 활성화, 공동 평가 등) (强) ·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기질 공동관리 기반 마련 (新)

- 설 치 :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(「미세먼지특별법」 제10조)
- 구 성 : 위원장 2인(국무총리, 민간위원장) 포함, 40인 이내 구성
(법 제11조)
 - 당연직(18) : 국무총리(위원장), 기재·교육·과기·외교·행안·문체·농림·산업·복지·환경·고용·국토·해수·중기부장관, 국조실장, 산림·기상청장
 - 위촉직(18) : 국무총리가 위촉, 위원장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 (※ 임기 3년, 1회 연임 가능)
- 기 능 : 미세먼지 대책 관련 사항 심의 (법 제10조)
 - 종합계획 수립·변경 및 이행상황 점검·평가
 -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·평가
 - 미세먼지 저감·관리 및 정책 조정·지원
 - 국민건강 관리 및 국제협력 등

붙임 4
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부처별 담당자 현황

연번	구 분	담당자 및 연락처
1	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	과장 김재중, 서기관 백승엽 (044-200-2662, 2663)
2	기획재정부 탄소중립전략팀	팀장 최원석, 사무관 이현우 (044-215-4970, 4974)
3	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	과장 정윤경, 사무관 김상훈 (044-203-6353, 6357)
4	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대응팀	팀장 이찬영, 사무관 최창훈 (044-202-4511, 4512)
5	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	과장 조은정, 사무관 이세혁 (02-2100-7859, 7861)
6	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	과장 오영석, 사무관 엄경숙 (044-205-6360, 6365)
7	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	사무관 박래정, 주무관 윤용재 (044-203-2291, 2290)
8	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	팀장 윤광일, 사무관 조영지 (044-201-2911, 2915)
9	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	과장 이한철, 사무관 민승기 (044-203-4240, 4243)
10	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	과장 김한숙, 주무관 강영선 (044-202-2510, 2506)
11	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	과장 김영민, 사무관 박재완 (044-201-6860, 6874)
12	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	팀장 지영철, 사무관 서상훈 (044-202-8890, 8891)
13	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	과장 김정희, 사무관 심동휘 (044-201-3804, 3788)
14	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	과장 송종준, 사무관 이창민 (044-200-5280, 5289)
15	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	과장 이순배, 사무관 박현 (044-204-7420, 7425)
16	산림청 도시숲경관과	과장 김주열, 사무관 윤현정 (042-481-4223, 4224)
17	기상청 기획재정담당관	과장 조남산, 사무관 박희영 (042-481-7290, 7275)